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4. 6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2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7. 4. 6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정 상 택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제정 골자

(1) 조례제정·개폐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함 (안 제2조)

-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/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,

-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시·군·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/50 ~ 1/2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우리구의 경우 구민의 부담이 가장 적은 1/5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동 제정조례안은 사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0이상 20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해야할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는 연서 주민수가 가장 적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,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중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자의 연령이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연서 주민수 대상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·개폐청구 연서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함 (안 제2조)

-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/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,
-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시·군·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/50~1/2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우리구의 경우 구민의 부담이 가장 적은 1/50 이상으로 정하고자 함

3. 제정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

4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7. 2. 22 ~ 2007. 3. 14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7. 3. 29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의 수)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한다.

제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20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